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발 의 자 : 도정태의원외6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안 제1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 제116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 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실·과장급”을 “실·과·소장급”으로 하고,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제4호중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를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한다.

부칙중 “집행일”을 “집회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명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명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 ---------- ---------- ---------- ----------.
제2조(범위) **(생 략)** 1. **(생 략)**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법 제104조 내지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실・과・소장급** 3. **법 제113조 내지 제 116조**---------- ---------- 4.---------- --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집회일** ------.